

○○ 지방검찰청 (○○ 지청)

수신 수신자 참조

제목 성매매 피해아동·청소년 통지

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매매 피해아동·청소년을 통지합니다.

성매매 피해아동 · 청소년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	
	전화번호		전자우편주소	
	학교	학교	학년	반
보호자 (친권자 또는 법정 대리인)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	
	전화번호		관계	
	비고	※ 성매매 피해아동·청소년의 보호자(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)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아동·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.		
실제 연락 가능한 사람	성명		관계	
	주소		전화번호	
	비고	※ 성매매 피해아동·청소년과 직접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연락이 가능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.		
담당자	성명		소속	
	전화번호		계급	

○○ 지방검찰청 (○○ 지청장)

직인

수신자 성평등가족부장관,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